

「2022-제5호(Vol. 23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2. 7. 30.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운영예결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경제동향 2022. 7월 호 • 중국의 주택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와 평가 • 최근 신흥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 대응 현황 • 노드스트림1 재가동 이후 EU 가스수급 및 영향 평가 	<p>한국개발연구원</p> <p>국제금융센터</p> <p>“</p> <p>“</p>
2. 재정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재정동향 7월호 • 유류세 인하로 전국 시군구 세입 감소전망 	<p>기획재정부</p> <p>서울신문 기사</p>
3. 예산·재정 관련법령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p>법제처</p> <p>“</p> <p>“</p>
4. 정책 및 연구 (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방향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방향과 전망 • 강원도 인구변화 실태와 시사점 	<p>산업연구원</p> <p>국회입법조사처</p> <p>강원연구원</p> <p>“</p>
5. 뉴스브리핑 (1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6월 국세수입 현황 • 257개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 2022년 세계개편안 발표 	<p>기획재정부</p> <p>행정안전부</p> <p>“</p> <p>기획재정부</p>

■ KDI 경제동향 2022.7월 호

[요약 및 평가]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개선되었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제조업은 정체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을 지속

- 방역조치 해제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함
 -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등 방역조치 해제의 영향이 컸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생산의 증가폭이 확대됨
 - ◆ 고용시장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
- 그러나 지정학적 위험의 장기화와 주요국의 긴축기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제조업이 정체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음.
 - ◆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반도체 등 ICT 부문의 생산은 대외여건 악화로 감소세를 보임
 - ◆ 아울러 물가상승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구체적 지표]

- 경기
 - ◆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4.4%)보다 높은 7.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계절조정 감안하면 0.8% 증가함.
 - ◆ 제조업은 출하(4.3%)가 증가하고 재고율(117.4%→114.5%)은 하락하였으나 평균가동률(76.7%→75.7%)은 전월(4월)에 이어 낮아지는 모습
 - ◆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요인과 함께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기업심리 지표가 하락함.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파급되는 모습
 - 고물가와 대외 하방요인의 확대로 기업심리지수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하며 향후 경기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을 시사
- 소비
 - ◆ 5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가 증가하였으나 내구재의 감소세는 지속되며 전월(0.4%)에 이어 0.7%의 낮은 증가율 기록
 - ◆ 서비스업생산은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전월(5.0%)보다 높은 7.5%의 증가율을 기록
 - ◆ 한편,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2.6)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96.4를 기록
- 수출 : 수출은 중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되며 일평균 기준으로 증가세 확대(10.7%→15.0%)
- 노동시장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서비스업 반등하며 고용회복세
- 물가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함
 - ◆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전월(5.4%)보다 높은 6.0%의 상승률을 기록
 - ◆ 상품물가(7.6%→8.5%)는 국제유가 상승에 주로 기인
 - ◆ 서비스물가(3.5%→3.9%)는 개인서비스가격(5.1%→5.8%)를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바로가기](#)

1. 경제

출처

■ 중국의 주택구매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와 평가

국제금융센터

◆ 배경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주택건설이 중단되면서 주택구매자들의 주택 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

- ◆ 현재 상황을 중국판 모기지 위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가? ⇒ 없음
- ◆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는 자의인가? 상환능력을 상실해서 인가?
⇒ 자의,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반발
- ◆ 현재 상황에 대해 은행과 정책당국은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가?
⇒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대출자산의 20%를 차지, 은행 수익성 악화 우려
- ◆ 중국주택시장의 대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 긴급 구제금융 지원
- ◆ 구제금융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능성은 없는가? ⇒ 있음. 그래도 지원 필요
- ◆ (시사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고조되면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 중국 경기둔화를 가속시키면서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

■ 최근 신흥국의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 대응 현황

국제금융센터

- (이슈) 그동안 미국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로 신흥국 전반에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금융 시장 불안도 심화함에 따라 주요 신흥국들의 최근 정책 대응을 점검
- (각국 대응 현황)
인도는 외화자금 유입 촉진 / 중국은 자본유입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 대책 추진
칠레는 외환시장 개입 / 대만은 중시안정대책 발표 /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 보유 국채매각

■ 노드스트림1 재가동 이후 EU 가스수급 및 영향 평가

국제금융센터

- (이슈) 노드스트림1 보수기간 종료(7.21일) 후 러시아는 對 EU 가스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공급규모를 축소키로 함에 따라 향후 가스 수급 상황 및 영향을 점검
- (가스수급 전망) 러시아의 추가 공급축소 위험이 잔존하고 있어 EU의 수입처 다변화, 수요 억제 정책 도입 등 불구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수급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
- (영향) 물가 상방압력 가중, 경기침체 위험 확대로 인해 경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유럽중앙은행 통화긴축 딜레마도 가중될 우려

2. 재정

출처

■ 2022년 5월 재정동향 (월간 재정동향 7월호)

기획재정부

- (재정 운용 동향)

- ① 총수입: 국세·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한 48.2%
 - ② 총지출: 2차 추경 확정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0조원) 지급 조치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50.4%
 - ③ 수지: 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1.2조원 적자,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 △22.7조원 확대
 - ④ 채무: 5월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말 1,001.0조원 대비 17.8조원 늘어난 1,018.8조원(2차 추경 기준 '22년말 전망 : 1037.7조원)
- ※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지방정부 채무는 연1회 산출)

[바로가기](#)

■ 유류세 인하로 전국 시군구 세입 감소 전망

서울신문 기사

- 세법상 유류세란 용어는 없음.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를 뜻함.
-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분 자동차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10%)가 자동으로 따라 붙어서 유류세라고 부름.
- 세법상 교통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475원, 경유가 340원으로 정해져 있음. 유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 금액은 바뀌지 않음.
- 교통세는 정액으로 돼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때문에 통상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기 위해 하는 정책 결정은 교통세를 탄력세율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임.

*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는 정유업자, 유류 수입업자가 매월 반출한 유류에 대해 주행세를 산출해 다음달 말까지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한다. 주행세를 징수한 시장·군수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징수액을 송금하면 울산시장은 25일까지 전국 시군별로 배분해 보내 준다. SK, 현대 등 납세 규모가 큰 업체가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위해 울산시장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다.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제정 '22.6.10. 시행 '23.1.1.)

법제처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변동(참고)

연도	정책내용	세부내용
2017~2021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9호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신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행정안전부가 소멸위기에 있는 기초지자체인 인구감소지역(889개)와 관심지역(18개) 지정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22조~제29조 신설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을 10년(2022~2031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인구감소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근거 마련

[바로가기](#)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2.6.30. 시행 '22.6.30.)

법제처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바로가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2.8.2. 시행 '22.8.2.)

법제처

- 현재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산업연구원

■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방향

- 정부별 균형발전 핵심지표(인구, 재정자립도)에 따른 시도별 순위 변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서울	1	7.43	4	7.20	4	7.14	4	6.79
부산	7	6.46	7	5.88	9	5.34	9	4.78
대구	6	6.46	6	5.98	8	5.43	8	5.25
인천	2	7.10	3	7.33	3	7.33	3	6.97
광주	8	6.07	8	5.83	6	5.59	7	5.46
대전	5	6.88	5	6.75	5	6.31	6	5.68
울산	3	7.09	2	7.38	2	7.65	5	6.48
세종					7	5.57	1	8.10
경기	4	7.04	1	7.48	1	8.08	2	8.09
강원	12	3.13	13	3.20	15	2.89	15	2.83
충북	11	3.51	11	3.82	12	3.73	12	3.96
충남	13	2.94	12	3.46	13	3.73	13	3.85
전북	14	2.90	14	2.87	16	2.67	16	2.61
전남	16	2.12	16	2.01	17	2.01	17	2.24
경북	15	2.80	15	2.76	14	2.93	14	2.99
경남	10	3.75	9	4.07	10	4.37	11	4.35
제주	9	4.35	10	3.98	11	4.23	10	4.59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예산기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정부는 결산기준임

* 인구증가율은 각 정부 중반시점을 기준으로 40년 평균증가율 기준, 재정자립도는 각 정부별 초기 3년 평균 재정자립도 기준임.

- (강원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인구와 재정자립도 모두 낮은 수준,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

-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기존의 장소기반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대응지역, 여러 특구지역제도 등의 장소기반 정책은 한계
⇒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가 이뤄지는 공간을 조성하고 조성해야할 필요
- 지역특화산업 육성 필요 ⇒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에 정책역량 기울여야
- 지역의 균형발전 수준과 지표를 보다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법적근거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98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10년간 운영 / 시도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제22조 제1항) 이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씩 출연하는 정부 출연금이다(제23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용도로 운용된다(제24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지원 계정은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기초지원계정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제25조)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한다(제25조 제4항) 2022년 2월 10일 제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첫째, 광역지원계정은 투자계획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역 비율·인구감소지수·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인구 및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서울시와 세종시는 제외한다. 둘째,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고, 5%는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제출한 투자계획의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등을 고려해 차등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친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조합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조합”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리·운용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 조합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 (투자계획)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관한 투자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27조 제1항)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가 광역지원계정 또는 기초지원계정의 운영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으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제27조 제2항)
- (투자협약) 중앙정부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29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의 한시적 기금이기 때문에 장기사업발굴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행안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제시하면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중앙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성과분석)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현재 성과분석 기준 마련 용역 중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정 현황)

연도	2022년			2023년		
구분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전체 예산	7,500억원의 75% (5,625억 원)		7,500억원의 25% (1,875억 원)	1조원의 75% (7,500억원)		1조원의 25% (2,500억원)
	5,625억원의 95% (5,343억 7,500만원)	5,625억원의 5% (281억 2,500만원)		7,500억원의 95% (7,125억원)	7,500억원의 5% (375억원)	
최대 배정액	120억원	30억원	378억원 (전남)	160억원	40억원	505억원 (전남)
평균 배정액	60억원	15억 6,000만원	-	80억 1,000만원	20억 8,000만원	

- (유사한 재정지원 제도)

✓ 지역상생발전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를 근거로 하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서울·인천·경기)가 재원을 출연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 조정장치임.
-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 신설당시 지방소비세의 세원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로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원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설계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

(단위: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정지원 계정	3,558	3,711	1,807	1,915	2,169	2,215	2,340	2,226	2,436	2,503
용자관리 계정	-	-	-	3,756	2,120	2,400	2,727	3,263	4,802	4,150
전환사업 보정계정								35,681	35,681	45,99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
- 지역자율계정은 도서(섬), 지방소도읍, 접경지역, 농어촌 등의 생활기반 확충과 관련한 사업을 보조하는 재원임.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함.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은 재정력을 기준으로 재원이 배분된다는 점과 지역밀착형 사업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재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자율계정	3,558	3,711	1,807	1,915	2,169	2,215	2,340	2,226	2,436	2,503
지역지원계정	-	-	-	3,756	2,120	2,400	2,727	3,263	4,802	4,150
전환사업보정계정								35,681	35,681	45,992

✓ 비교표

구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재정지원계정)	(전환사업보정계정)	
목적	지방소멸 방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완화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
재원 출연주체	중앙정부 (지방재정공제회)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최대 관리주체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재정공제회)		기획재정부
재원 수령주체	지방소멸지역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재원규모	연간 1조원 (2022년 7,500억원)	2022년 2,503억원	2022년 4조 5,992억원	2022년 2조 3천억원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유사점		한시적기금		중앙정부 재원
		동일한 조합에서 관리		지역밀착형 사업지원
		지자체가 사전계획 수립		포괄보조금이므로 주어진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추진
조합에서 매년 성과분석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차이점		재원출연주체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재원출연 주체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므로 지자체가 대응지방비를 부담해야함
		지방소멸 위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쟁점사항)

- 10년의 한시적인 기금이므로 10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임.
-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면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소멸기금을 받으면 오히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가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해 해당지역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됨.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것보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을 선호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이디어 발굴해 투자계획수립, 기금용도제한 but 보통교부세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임

-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일정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게 됨.

- (향후과제)

- 연계와 협력을 통한 거점사업 실시
- 성과분석 이후 컨설팅과 사례 공유를 통한 중장기적 후속조치
- 지방소멸 대응의 동기부여
⇒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입을 제외하는 방안 고려

[바로가기](#)

■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수립 방향과 전략

강원연구원

- (논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41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23개 조항에 불과하여 개념만 있고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모두 빠져 있는 상황임.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비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함. 최우선적으로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결론)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도민의 삶의 질은 후퇴하여 절반의 성공임. 규제완화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존재하며 투자유치, 지역개발만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면 도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수립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자연자원, 청정자원 등)가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며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규제완화보다는 **규제합리화(규제완화 + 규제강화)**를 바탕으로 구체화해야 함.

[바로가기](#)

■ 강원도 인구변화 실태와 시사점

강원연구원

- (실태)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방의 지역소멸 가속화

- (결론)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을 통한 20대 인구 늘리기
⇒ 캠퍼스 혁신파크·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IS) 등과 연계, 첨단일자리 창출 / 채용연계 계약학과 운영 지원 / 공공기관 지방이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늘리기
⇒ 워크이션* 유치를 위해 공유오피스,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모색 필요
*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형태 및 여행트렌드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2.6월 국세수입 현황 :

6월 국세수입 누계 218.3조원, 전년 동기대비 +36.5조원, 진도율 55.0%

기획재정부

- (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3조원 증가
 - * 상용근로자수(월평균, 만명): ('20.12~'21.5) 1,470 → ('21.12~'22.5) 1,549 <+5.4%>
- (법인세)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3.8조원 증가
 -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 : ('20) 67.5 → ('21) 106.8 <+58.2%>
- (부가가치세)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0조원 증가
 - *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21.3분기)+5.6, ('21.4분기)+6.4, ('22.1분기)+2.8
 - 수입액(억불) : ('21.1~5월) 2,354.1 → ('22.1~5월) 3,006.1 <+27.7%>
- (교통세)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2.9조원 감소
 - *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21.11.12~'22.4.30(20%), '22.5.1~6.30(30%))
- (기타) 2.3조원 증가

[바로가기](#)

■ 257개 지방공기업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함.
- 평가방법은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의 3개 분야 20여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됨.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모두 공개됨
-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임직원이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함. 또한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이 5~1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음. “가 ~ 마 5등급 체계”
- 나급 : 원주 하수도, 강릉 시설관리공단, 동해 시설관리공단, 동해 하수도,
다급 : 강원도 개발공사, 춘천 시설관리공단, 춘천 하수도, 강릉 하수도, 속초시 시설관리
공단, 속초 하수도, 영월 시설관리공단, 정선 시설관리공단,
라급 : 원주 시설관리공단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행정안전부

- * 지방공공요금 :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전철료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6% 상승함에 따라, 7월 7일(목) 오후 4시에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지방물가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함.
-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경남도, 제주도는 하반기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으며, 부산시, 전남도, 경북도도 동결을 검토 중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함.
- 법인세 : 세율 - 최고세율을 25%→22%로 인하 / 과표구간 - 4단계→2~3단계로 단순화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

기획재정부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1%	3 →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 6%	12%	
국가전략기술	6 → 8%	8%	16%	4%

- 기업상속공제* 확대 :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된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업상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23년 → 25년
 - *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 보유금액 기준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 증권거래세 인하 :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23년 → 25년
 - *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6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좌 등)	
15,000 ~ 30,000	38%		
30,000 ~ 50,000	40%		
50,000 ~ 100,000	42%		
100,000 ~	45%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 2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및 최대지급액 10% 인상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0.6~6.0% → 0.5~2.7%) 및 세부담상한 조정(150%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 현행 6억원 → 8억원(23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 현행 11억원 → 12억원
- “집대비” 명칭을 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바로가기](#)